

물품 관리 규정

제정 1990. 8. 27.
제13차 개정 2021. 02.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라 함은 내·외자로 구입하는 모든 기계, 기구, 도구, 용구, 표본, 모형, 집기류, 용품류 및 제작품과 수중품 등 본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동산(動産)을 말한다. 다만, 도서류 및 시설물에 부착되어 지는 설비물(보일러류, 배전판류, 유류, 블랭크류, 소화전류, 계량기류, 환풍기류 등)과 소모품은 제외한다.
2. “소모품”이라 함은 최초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원형을 보존하지 못하고 쓰는대로 낡아서 못쓰게 되거나 아주 없어지는 물품을 말한다.
3. “불용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현재 사용가치가 없거나 유휴물품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품
 - 나.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재활용할 수 없는 물품
 - 다.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라. 기타 폐품 및 잡품 일체로서 경제적 이용가치가 없는 물품
 - 마.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 수선비가 과다하여 수선할 경우 비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물품
4. “검수”라 함은 물품의 구매, 제작, 보수 및 수리 공정의 완성품을 물품구입요구서, 지출결의서, 납품서, 시방서 등의 서류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현품이 기재내용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는 일을 말한다.
5. 교비 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실시한다. 감가상각의 범위와 방법 및 내용연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호 신설 2011.12.28)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속한방병원을 제외한 본교의 모든 부속(설)기관 및 부서에 적용된다.

제2장 물품관리

제4조(업무관장) ① 물품의 전체적 상황의 파악, 정기 또는 수시 조사 및 관리, 물품분류기호 부여 및 발행은 총무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00.10.24., 2004.2.16., 2019.06.25)
 ② 각 부서별로 비치되어 사용되는 물품은 그 부서에서 관리한다.

제5조(사용자의 관리와 책임) ① 물품의 사용자는 이 규정 제6조에 정한 물품관리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총괄적인 관리는 행정지원처장이 행한다. (개정 2000.10.24., 2019.06.25)
 ③ 부서별 물품관리 책임은 물품을 관리하는 주임 또는 선임직원이 제1차, 부서장이 최종 책임자가 된다.
 ④ 연구실에 비치된 물품에 대한 책임은 당해 교원에게 있다.
 ⑤ 해당학과 실험실습실의 물품보관 관리책임자는 담당교원이 제1차, 학과장이 최종 책임자가 된다.
 ⑥ 각 부서에서는 물품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소속직원 중에서 별도로 관리담당자를 정할 수 있다.

- ⑦ 해당부서의 물품관리 책임자(제1차 및 최종책임자)가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해당 품을 인수인계하고, 후임자는 1주일이내에 인수인계된 물품대장1부를 총무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1., 2004.2.16., 2019.06.25)
- ⑧ 위치실(연구실, 실험실, 행정실) 및 소속 변경 시 관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1.12.28)

제6조(물품관리의 원칙) 행정지원처 총무팀은 교내 전반적인 물품을 통합 관리하되 처, 부, 부속 기관별로 비치되어 사용되는 물품은 소속부서의 부서장 책임아래 관리하도록 하고 총무팀의 물품관리 업무는 다음의 각 호, 각 목에 따른다. (개정 2000.10.24., 2004.2.16., 2019.06.25)

1. 물품구입 후 7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등록을 필하고, 각 물품에 고유의 물품코드번호를 부여하여 물품코드표(바코드)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개정 2000.10.24., 2005.8.10)
2. 소속 사용기관에서는 전 항에 의해 부착된 물품코드표를 임의로 떼어내거나 훼손시킬 수 없다.
3. 행정지원처장은 물품의 화재, 도난, 파손등 사고방지상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부서에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0.24., 2019.06.25)
4. 물품의 보관여부와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일반물품과 교육용·연구용 비품 및 실험·실습·연구용 기자재로 구분하여 격년제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사용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0.10.24., 2002.4.11)
5. 재물조사 결과, 물품대장과 현품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제6조 7호에 따른다.
6. 물품은 일반물품과 교육용물품, 연구용 물품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개정 2002.4.11)
7. 물품의 도난, 망실, 파손시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 가. 망실, 파손의 사실을 통보 받았거나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물품순·망실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제6조 7호 나에 의거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4., 2004.2.16., 2019.06.25)
 - 나. 망실, 파손이 사용자 또는 물품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수증품) ① 외부로부터 물품을 수증받았을 경우에는 수증물품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부서 물품관리대장에 작성 후, 그 결과를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5)

- ② 수증물품 반입 통보를 받은 총무팀에서는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5)

(조 개정 2000.10.24., 2004.2.16)

제8조(물품의 개조) 등록된 물품의 원형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엔 물품개조 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후 시행하며, 그 결과를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4., 2004.2.16., 2019.06.25)

제9조(자체제작 및 조립) 자체에서 필요에 따라 실험실습기자재나 일반 비품등을 제작 또는 조립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물품 제작·조립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4., 2004.2.16., 2019.06.25)

제10조(대여 및 반출) ① 물품은 학교교육 목적외의 사용으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 또는 특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대여하고, 그 결과를 총무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비품의 차용, 대여 및 수선등으로 부득이 학교외로 반출할 때는 일반 물품 및 교육용 비품은 총무팀, 전산장비 및 S/W는 학술정보원, 실험·실습기자재는 중앙기기센터에서 반출허가(반출증)를 받아야 하며, 반출증(별지 제4호 서식) 없이는 교내 물품을 임의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02.4.11., 2004.4.15., 2019.06.25)
- (조 개정 2000.10.24., 2004.2.16)

제11조(물품관리전환) 물품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관리전환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물품 관리전환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일반 물품 및 교육용 비품은 총무팀, 전산장비 S/W는 학술정보원, 실험·실습기자재는 중앙기기센터에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무팀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 물품의 관리전환은 물품관리책임자가 관리전환하며, 그 결과를 총무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4., 2002.4.11., 2004.2.16., 2004.4.15., 2019.06.25.)

제12조(반납) 물품 사용부서의 관리책임자는 사용 혹은 보관중인 물품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물품반납불용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총무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4., 2002.4.11., 2004.2.16., 2019.06.25.)

제13조(보고) 보고에는 긴급보고와 정기보고가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긴급보고: 물품사용 중 망실, 손실, 분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원형 변형 시에는 발생 즉시 구두보고 및 서면보고
2. 정기보고: 정기 재물조사 후 비품의 현황 및 상태를 서면작성 보고

제13조의 2 (산학협력단 물품 이관) ① 산학협력단장은 교외 연구비로 구입한 기자재 또는 집기 비품을 학교로 이관할 경우, 자체 재물조사 후 본교 관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관된 물품은 학교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한다.

(조 신설 2011.12.28.)

제3장 불용품 처리

제14조(절차) ① 사용부서는 총무팀에 보수의뢰한 물품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수리를 담당한 업체의 소견서를 작성, 날인한 후 해당 서류의 사본을 물품반납불용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해당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자, 책상, 가구, 난로, 선풍기와 같이 단순판단으로 불용결정이 가능한 부분은 총무팀에서 결정하여 불용품 처리한다. (개정 2004.2.16., 2019.06.25.)

② 불용품의 처분에 대하여 일반물품 및 교육용비품은 총무팀, 전산장비 및 S/W는 학술정보원, 실험실습기자재는 중앙기기센터에서 주관한다. 다만, 연구용 물품은 물품관리책임자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불용처리 후 관련서류를 총무팀으로 제출한다. (개정 2004.2.16., 2004.4.15., 2019.06.25.)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주관부서는 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한 후 그 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불용처리 결과를 총무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02.4.11.) (개정 2004.2.16., 2019.06.25.)

④ 전산장비 등 성능을 요하는 물품에 대한 불용여부는 해당주관부서장이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부서에서는 동 기준에 미달되는 물품에 대해서 물품반납불용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주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02.4.11.)

⑤ 특별한 경우 물품을 관리 사용하는 각 부처에서 직접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주관부서를 경유하고 총장의 재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처분 완료 즉시 총무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6., 2019.06.25.)

⑥ 불용처리할 물품에 대해서 해당 부서 주관하에 불용품처분조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 한 후 500만원 미만인 물품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매각, 해체, 폐기 또는 기증할 수 있고 500만 원 이상의 물품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각, 해체, 폐기 또는 기증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본교의 회계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03.09., 2021.02.19.)

(조 개정 2000.10.24., 2002.4.11.)

제14조의 2(불용품의 해체, 폐기 및 기증) ① 해당 주관부서 불용품담당자는 불용품 상태가 폐품인 경우에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분물을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 또는 폐기한다.

② 해당 주관부서 불용품담당자는 폐기 또는 매각 물품에 한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법인에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15.03.09., 2021.02.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된 부분물품에 대한 부품내역 및 사용내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 내역은 해당 주관부서에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02.4.11.)

제15조(승인권한) ① 불용품의 처분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5.03.09., 2021.02.19.)

② 삭제 (2015.03.09)

제16조(대장의 정리) 불용품으로 처분된 물품은 비품대장에서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검수

제17조(검수부서) 납품된 물품은 구매요구부서의 입회하에 시설팀에서 검수한다.. (개정 2000.10.24., 2002.4.11., 2005.8.10., 2019.06.25)

제18조(사전사용금지) 검수를 받지 아니한 물품은 사전에 입고 또는 사용 할 수 없다.

제19조(검수원칙) ① 검수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밀히 검수하여야 한다.

1. 구입물품 납기이행 여부
2. 구입물품의 정상적 기능, 능력 여부
3. 구입물품의 파손, 변질, 감량 기타의 하자여부
- ② (개정 2000.10.24.) (삭제 2002.4.11.)
- ③ 품질에 대한 성분 또는 함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교내의 기관이나 기타 공인 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발의처에서 물품구입을 발의할 때에는 검수에 필요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각종 자료가 없는 것은 검수할 수 없으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가검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료가 구비 되는대로 본 검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1.)
- ⑥ 검수할 물품의 수량이 다량일 경우에는 발췌 검수할 수 있다.

제20조(검수방법) ① 계약사무담당자(총무팀)는 물품의 발주와 동시에 물품의 구매, 제작, 보수 및 수리에 있어 계약서, 시방서, 도면, 카다로그, 견본 등 검수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검수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1., 2004.2.16., 2019.06.25)

② 검수담당자는 제1항의 각종 자료와 물품 및 공사내용을 대조하여 품질, 수량, 가격 및 기타 제 조건이 합당한가의 여부를 확인후 검수하여야 한다.

③ 검수담당자는 검수를 마친 후 검수조서(총장의 재가를 받아 별도로 정한다)를 작성하여 관계서류와 함께 물품 구매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1.)

제21조(검수시기) ① 검수자는 구매부서로부터 검수서류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불가항력, 성능테스트 등 기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처장의 협조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4.11., 2019.06.25)

② 수리용 기계부품등의 물품은 반드시 부품의 교체전에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제22조(검수거부) 검수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사유를 물품구매 부서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빈번한 하자의 발생으로 본교에 재정상의 불이익 및 업무진행에 지장이 미쳤을 경우 거래의 중지를 품의할 수 있다.

1. 물품구입요구서등 관계서류와 현품이 상이한 경우
2. 물품이 파손, 변질 도는 감손되어 있을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검수를 필하지 아니한 물품의 입고 또는 사용한 때
4. 기타 현저한 이상이 있는 경우

제23조(입회의 요청) ① 기술 및 전문적 검수를 요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검수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교직원에게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수송업자에 의하여 배달 된 물품으로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수송업자와 관계자의 입회하에 확인증을 작성하여 증거로 보관한다.

(조 개정 2002.4.11.)

제24조(물품등재) 물품등재 담당자는 검수가 완료된 물품에 한하여 검수조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을 등재하여야 하며, 물품은 일반물품(사무용비품, 사무용기계기구, 사무용차량운반구), 교육용 비품, 실험·실습기자재(교육용기계기구, 교육용차량운반구) 및 연구용 비품·기자재로 나누어 등재한다. (개정 2002.4.11.)

제25조(검수확인) 회계팀에서는 반드시 검수필인을 확인하고 물품대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조 변경 2002. 4.11.) (개정 2019.06.25)

제2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조 변경 2002.4.11)

부칙

이 규정은 199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불용품처분규정 및 검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11, 2004.2.16)

이 규정은 2004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288, 2004.4.14)

이 규정은 200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822, 2005.8.10)

이 규정은 200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550, 2011.12.28)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82, 2015.03.09)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18, 2021.02.19)

이 규정은 2021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1]

물 품 손. 망 실 보 고 서

결 재	계	과 장	부 장	처 장	부총장	총 장

물품관리부서 (비치장소)		손.망실 발생일	
------------------	--	----------	--

손.망실 발생사유 (구체적)

물 품 내 용

번호	물품분류기호	품 명	규격/ 형식	수량	구입일자	구입금액	비품/기자재	용 도	조치 사항

위와 같이 물품 손.망실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물품관리 실무자 (인)
 물품관리 책임자 (인)
 (과장, 학과장)

[서식 1-2]

물 품 개 조 의 뢰 서

결 재	계	과 장	부 장	처 장	부총장	총 장

물품관리부서 (비치장소)		물품 개조일	
------------------	--	--------	--

물품 개조 사유 :

개 조 내 용

번호	물품분류기호	품 명	규격/ 형식	수량	구입일자	구입금액	개조 내용	비품/기자재	국고 교부	용 도

위와 같이 물품 개조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물품관리 실무자 (인)
 물품관리 책임자 (인)
 (부장, 학과장)

[서식 1-3]

물 품 제 작 . 조 립 보 고 서

결 재	계	과	장	부	장	처	장	부총	총	장

물품관리부서 (비치장소)		물품 제작(조립)일	
------------------	--	---------------	--

물품 제작(조립) 사유 :

제작. 조립 내용

번호	물품분류기호	품명	규격/형식	수량	구입금액	개조 내용	비품/기자재	국고/교비	용도

위와 같이 물품 제작(조립)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물품관리 실무자 (인)
 물품관리 책임자 (인)
 (부장, 학과장)

[서식 1-4]

반 출 허 가 증

결 재	계	과	장	부	장	처	장			

반 출 허가 신청서

품명		규격. 형식	
물품분류 기호		비치장소	
수량/단위		반출기간	
행선지			

반출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반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부서 :

물품관리실무자 : (인)
 물품관리책임자 : (인)
 (부장, 학과장)

반 출 증			
신청부서		물품분류기호	
품명		규격	
수량/단위		반출기간	
행선지			
<u>반출 사유 :</u>			
위와 같이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해당주 관부서장) (인)			

[서식 1-5]

수증 물품 보고서

결재	계	과	장	부	장	처	장	부총	장	총	장
----	---	---	---	---	---	---	---	----	---	---	---

수증 부서	담당자
-------	-----

기증처	기증인
<u>기증 사유 :</u>	

수증물품내역

일련 번호	품명	규격 / 형식	수량	금액	수증 일자	용도

위와 같이 수증 물품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물품관리 실무자 (인)
 물품관리 책임자 (인)
 (부장, 학과장)

[서식 1-6]

물품 관리 · 사용 전환 신청서

결재	계	과	장	부	장	처	장	부총	장	총	장
----	---	---	---	---	---	---	---	----	---	---	---

번호	물품분류 기호	품명	규격형식	수량	구입 일자	금액	물품관리 / 사용전환 사유	비 품 기자재	교 체 국고	사용전환 기간	용도

위와 같이 물품의 관리 · 사용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물품 인수부서 : 실무자 : (인)
 책임자 : (인)
 물품 인계부서 : 실무자 : (인)
 책임자 : (인)

[서식 1-7]

물품 반납 · 불용 신청서

결 재	계	과 장	부 장	처 장	부총장	총 장

번호	구 分	물품분류 기호	품 명	규격/형 식	수 량	구입일 자	구입금액	반납 · 불용사유	물품비치 장소	비 고

※ 구분란에는 “반납” 또는 “불용”으로 기재함.

첨 부 : 업체소견서(불용인 경우) _____부. 끝.

위와 같이 물품 반납 · 불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물품관리 실무자 : (인)
 물품관리 책임자 : (인)
 (학과장, 부장)

[서식 1-8]

불 용 품 처 분 조 서

결 재	계	과 장	부 장	처 장	부총장	총 장

번호	처분방법	물품분류 기호	품 명	규격/ 형식	수량	구입일자	구입단가	금 액	불용 결정 사유	비 고

※ 처분방법란에는 “매각, 폐기, 해체, 기증”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처분에 대한 의견) :

첨 부 : 물품반납신청서 _____부. 끝.

위와 같이 ()처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물품관리 실무자 : (인)
 물품관리 책임자 : (인)
 (학과장, 부장)

[서식 1-8]

물 품 불 용 신 청 서

결 재	계	과	장	부	장	처	장

번 호	구 분	물 품 분류기호	품명	규격/형식	수량	구입일자	구입금액	잔존가액	반납·불용사유	물 품 비치장소	비고

※ 구분란에는 “반납” 또는 “불용”으로 기재함.

첨 부 : 업체소견서(불용인 경우) _____부 . 끝.

위와 같이 물품 반납·불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서/학과 :

물품관리 실무자 :

(인)

물품관리 책임자 :

(인)